

1. 개정이유
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‘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’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제외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,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 기준·인증표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 10조, 제11조 삭제)
- 나.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, 교육프로그램·교육과정 인증신청서, 인증서 삭제 (별표2, 별지 제10호서식, 제11호서식, 제12호서식 삭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(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신청절차 등)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교육시설 현황 자료</u> <u>2. 강사 개인별 이력서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</u>	<u><삭 제></u>

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⑧ 시·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,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)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)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·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